

2018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8. 1. 9. (화) 10:0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9명 중 8명 참석)
 - 가. 교직원대표 : 위원장 한승준 기획처장, 최혜지 학생처장, 하성호 경영기획팀장
 - 나. 학생대표 : 강해인 총학생회장, 봉수민 부총학생회장, 신민경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다. 외부전문가 : 김문규 회계사
 - 라. 동문대표 : 박에스더 총동창회장
4. 불참자 : 박영미 회계사
5. 안건
 - 가. 2017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심의
 - 나.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및 자금예산(안) 심의
 - 다. 2018학년도 잉여금 처리 심사
 - 라. 적립금 항목 조정
 - 마. 기타 안건

경영기획팀장이 2017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설명하다.

1. 2017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심의

하성호 위원(경영기획팀장)이 2017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설명하다.
(본예산 대비 4,526,899천원이 증가한 97,845,685천원)

김문규 위원 : 토지 매입 관련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성호 위원 : 학교 정문 입구 쪽에 국유지가 있는데 매입이 불가하여 학교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2017년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 가능 답변에 따라 당시 공시지가 금액으로 매입하려 하였다. 이 토지 분할 과정 중 공시지가가 인상되었고, 이를 매입할 경우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 매입 대신 사용료(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2017년 추경예산에는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박에스더 위원 : 해당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가?

하성호 위원 : 해당 토지의 구획이 모호하며 보행로로 볼 수 도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간서명> 위원장



2.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및 자금예산(안) 심의

하성호 위원(경영기획팀장)이 2018학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대학 입학금은 전년대비 16%인하,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등록금)은 동결, 2018학년도 자금예산은 109,559,468천원)

봉수민 위원 : 건축기금을 인출하여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사용 내역은?

하성호 위원 : 특정목적적립금은 운영지출(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등록금 수입 대비 운영지출에 필요한 부족분을 기금 인출하며 필요한 곳에 집행한다.

강해인 위원 : 특정목적적립금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예정은 없는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다시 학교에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하성호 위원 : 기금의 사용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학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에서는 가능하다.

한승준 위원장 : 산학협력단이 활성화가 되려면 공과 계열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은 그렇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전입금이 많지 않다.

박에스더 위원 :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분리되어 있는가?

하성호 위원 : 서울여자대학교의 조직이다. 단, 별도의 회계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다. 교비에서는 산학협력단으로 전출이 불가능하며 반대는 가능하다.

박에스더 위원 : 전입금 규모는 ?

한승준 위원장 : 2014학년도 1억5천만 원, 2015학년도 1억7천만 원, 2016학년도 2억5천만 원 이다.

최혜지 위원 :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으로 전출도 불가능하다.

신민경 위원 : 대학원 충원율이 낮으므로 대학원 입학금 인하 계획은 없는가?

하성호 위원 : 대학원의 수지 분석을 하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원대비 충원율이 낮아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등록금 동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인하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강해인 위원 : 법인이 전입금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성호 위원 : 법인 전입금은 총 4억 원이며, 법정부담금이 6천만 원이다.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인에 법인부담금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은 수익사업이 많지 않다. 법인이 전출해 주는 전입금의 상당 부분은 기부금 수입이다.

봉수민 위원 : 법인은 기부금 수입 외에 기타 자산은 없는가?

하성호 위원 : 기독교연합회관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복빌딩이 있다.

봉수민 위원 : 교외장학금에서 국고장학금의 예산이 미반영 되어있다. 국고지원을 받을 경우 수혜 대상 학과는?

하성호 위원 : 2018학년도 신규 지원 사업으로는 PILOT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지침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

한승준 위원장 : 2018학년도 국고지원사업은 계속 사업만 확정되어 있다. 이로는 수도권 특성화대학지원사업, SW중심대학지원사업 등이며 ACE사업은 2017학년도에 종료된다. 2019학년도에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

최혜지 위원 : 국고지원사업의 장학금 예산은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다. 미반영된 국고장학금은 현재 산정이 안 되는 것이며 학년도 말에는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하여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강해인 위원 : 미반영 된 예산을 집행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성호 위원 : 국가I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며 그 외의 재정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교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한다.

강해인 위원 : 장학지원금으로 사용할지 학생경비로 사용하게 될지가 담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기가 어렵다.

하성호 위원 :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부분이 국가장학금이다. 교부금의 정확한 금액은 학기 중 또는 학기 말에 결정되어 이를 본예산서는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8학년도 추경에서 정확한 금액이 반영된다.

최혜지 위원 :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후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에서 심의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상에 승인된 사업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장학금과 학생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한승준 위원장 : 재정지원사업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목적에만 사용 한다.

강해인 위원 :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학생지원비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의 심의는 어디에서 하는가?

한승준 위원장 : 교부금을 지급하는 정부기관 또는 주관 부처에서 심의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이 예산이 교비에서는 추후 반영된다.

학생대표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Q 1. 교내장학금 2017년 본예산 124억, 2017추경 115억 편성하였다. 10억이 감소한 이유는? 2018본예산은 114억 편성하여 2017본예산 대비 10억이 감소했는데 이유

는?

- A. 하성호 위원 : 교내장학금의 주요 재원은 등록금 수입이다. 장학금 전체 예산은 정량적(금액)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정률적(비율)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학생의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장학금도 정률적으로 지급을 한다.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비율(21.2%)로 예산을 편성한다. 교내장학금의 경우에는 등록금 수입을 대비로 편성하게 된다. 교외장학금은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학년도 결산기준 교내외 장학금 지급률은 46.2% 이다. 교내장학금의 전체 금액은 줄었지만 비율로는 전년대비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

강해인 위원 : 현재 장학금 지급률이 50%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높은 등록금내고도 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지 않은가?

한승준 위원장 : 장학금만의 비율로만 볼 경우 낮은 수준은 아니다.

최혜지 위원 : 등록금 납부에 대한 환산 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장학금은 그 중의 일부이다. 수업을 받는 것도 함께 계산하면 높은 비율이다. 교육비 환원율로 볼 경우 2016학년도에는 164.9% 이다.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환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해인 위원 : 장학금을 늘릴 계획은 있는가?

하성호 위원 : 교내장학금은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고 교외장학금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교내 장학금을 늘리려면 적립금을 추가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업을 줄여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다른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적립금을 추가 인출해야 한다.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기에 현재의 교내 장학금 지급 비율은 유지하고, 교외 장학금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

Q 2. 연구학생경비

2-1. 연구학생경비가 2017학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는 60억 증가, 2018학년도 본예산은 2017학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감소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2-2 학생경비-학생지원비가 2017학년도 본예산은 19억, 추경에서는 57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8 본예산에서는 17억 줄었다. 그 근거는?

- A. 하성호 위원 :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이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2018학년도 추경에서는 이를 반영하므로 증가하게 된다.

Q. 3. 바롬관련경비

<간서명> 위원장



3-1 바롬1, 2 운영경비 / 바롬인성교육 강사료 / 바롬인성교육원 운영경비를 보면 본예산은 증액하고 추경에서는 감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학년도 본예산은 또 추경 수준이 아닌 2017학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증액하여 편성한다. 그 이유는?

A. 하성호 위원 : 본예산의 경우 사업이 시작되기 전 예산을 편성하기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편성하고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결산이 반영된 금액으로 편성하게 된다. 사업 진행 시 예산을 절감할 경우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된다.

Q. 3-2 바롬기념관 운영비를 2017학년도 본예산에서는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추경예산에서 20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2018학년도 본예산은 또 추경 수준이 아닌 2017학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3 연구학생경비-학생경비-학생지원비-바롬인성교육지원비가 1,740만원 증액되었다. 인성교육 지원비라는 내역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 비용이고 왜 2017학년도 본예산과 2017학년도 추경대비 2018학년도 본예산이 늘어났는가? 인성교육지원비의 내역은 무엇인가?

A. 하성호 위원 : 바롬기념관 운영비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감액했다. 본예산에서는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확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성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바롬인성교육 운영경비는 학생식비지원 금액이다. 대상 인원 산정을 2017학년도 추경에서는 종료 시점에 정확한 인원 산정이 가능하여 해당 예산만 편성하고, 본예산에서는 입사 대상 전체 인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Q. 3-4 현재 바롬 운영예산에서 수질검사 비용과 대청소 예산과 청소 주기는?

A. 하성호 위원 : 유관부서에 관련 자료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Q. 4 2016학년도 2017학년도까지의 지출 보수예산이 계속 감소 왔다. 그런데 2018학년도 본예산도 12억 정도 증가하는데 올해 교수 채용 계획이 있는가? 채용한다면 어느 학과인가?

A. 하성호 위원 : 공무원의 기본급 2.6% 인상에 따라 교직원의 보수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2018학년도에 상여금 등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동결로 책정한다. 이에 2018학년도 추경예산에서는 보수 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채용 계획은 1학기 3명, 2학기 4명 예정이다. 세부적인 채용 학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승준 위원장 : 교원 채용에 대한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처리해야할 내용은 아니며 별도의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구가 있다.

강해인 위원 : 교원 채용 계획에 따라 학생의 입장에서 교원 충원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고 싶다. 바름인성교육과 관련한 청소 내용 및 교원 채용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한다.

봉수민 위원 : 보수 예산의 상세내역이 인건비 상승이 아닌 교수 충원 계획에 따른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교무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Q. 5-6 . 건축기금은 154억 원을 특정목적기금 115억 원을 어떤 목적으로 인출하는가?

A. 하성호 위원 : 건축기금인출 중 150억 원은 특정목적기금으로 전용하고 4억 원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용한다. 특정목적기금 115억 원은 학과발전기금이 약 7천만 원, 도서관리모델링사업으로 19억 원,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으로 약 2억2천만원이다. 그 외의 92억 원은 교내 주요 사업 집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2018학년도 예산이 1,000억 원이 필요하다. 등록금 수입이 560억 원이므로 부족분을 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다.

Q. 7 . 학부수업료 수입이 2016년도부터 2018학년도 본예산까지 매년 10억 원 정도 감소하고 있다. 정원이 100~150명 정도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가?

A. 하성호 위원 : 정원 감소에 따른 수입 예산이 줄고 있다. 2017 추경에서는 휴학생이 늘어 등록금 수입이 더 감소하였다. 2018학년도에도 정원이 줄어든다.

Q. 8 . ACE사업이 종료되는데 캠퍼스마일리지 장학금 및 교양 수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있는가? 또한 누적된 캠퍼스마일리지 지급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A. 하성호 위원 : ACE 사업은 2018년 2월 28일자로 종료된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캠퍼스 마일리지는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에게는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양수업은 관련 부서에서 운영, 축소 및 폐지에 대하여 별도 결정 할 예정이다.

강해인 위원 : 7번 질문을 보충한다. 2018학년도에 추가로 정원 감축 예정이 있는가?

하성호 위원 : 추가로 정원 감축은 없다.

강해인 위원 : 어느 한 과라도 모집 정원 감축이 없다는 뜻인가?

하성호 위원 : 현재 논의 된 바 없다.

한승준 위원장 : 등록금 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모집 정원을 감축할 계획은 없다.

최혜지 위원 : 학과의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 즉 구조조정은 현재 계획이 없다.

강해인 위원 : 8번의 질문 답변이 이해가 안 된다. ACE 사업 종료 여부가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나?

하성호 위원 : 2018년 2월 28일자로 종료된다. 새로운 ACE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하여 교육부 지침이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PILOT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강해인 위원 : ACE 사업 지원금으로 충당된 캠퍼스 마일리지는 중지되는가?

하성호 위원 : 캠퍼스 마일리지는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에게는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존의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을 교비에서 지급한다.

한승준 위원장 : 2018학년도 교비 예산에 편성하였다. 현재 20만 마일리지 이상일 경우 지급이 되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예정이다.

3. 2018학년도 잉여금 처리 심사 및 적립금 항목 조정

하성호 위원(경영기획팀장)이 2018학년도 잉여금 처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잉여금의 정의는 2017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과 2018회계연도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등록금회계)의 차이이다. 잉여금 처리는 명시/사고 이월 등 목적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립 및 학생지원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건축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150억 원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해인 위원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적립을 제외하고 학생지원 경비로 사용하면 어떤가?

하성호 위원 :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된다. 등록금회계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만큼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을 경우 교내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다른 적립금에서 인출해야 한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만큼 적립하고 그 외에는 운영경비로 사용된다. 이러한 적립금으로 건물의 유지 보수 등의 예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강해인 위원 :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존재 이유가 교육의 제공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수업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가상각비만큼 적립을 하는 것 보다는 학생 직접 경비로 예산을 더 배정하여 사용하면 좋겠다. 감가상각비 적립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

하성호 위원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금회계로부터 비등록금회계로의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내에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최혜지 위원 :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다른 일부는 교육 환경이고 교내 시설은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재학생들과 후배들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강해인 위원 : 44억 원 감가상각비 중 16억 원 정도를 학생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맞는가?

하성호 위원 : 44억 원은 한도를 의미하며 이 중 16억 원까지를 감가상각비로 적립한다.

강해인 위원 : 16억 원을 제외하고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하성호 위원 : 2016학년도 결산서 참조하면 3억3천만 원 정도이다.

강해인 위원 : 16억 원 적립되는 것에 비하여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증액이 가능한가?

하성호 위원 : 잉여금을 학생지원비로 추가 배정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당해 연도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 할 경우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학생지원 경비는 본예산 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된다. 잉여금은 예산 절감을 통하여 예산 사업 종료 시점에 절약하여 저축하는 돈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최혜지 위원 : 잉여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관련법에 따라 재학생들에게는 아닐 수 있으나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잉여금을 학생경비로의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박에스더 위원 : 등록금 수입 예산이 부족하여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돈이 남았다면 즉, 잉여금이 생겼다면 해당 돈을 인출한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문규 위원 : 운영수입과 운영지출의 차액을 볼 경우 50~80억 원 적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 된다면 학교가 문을 닫거나, 적립금이 없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4. 기타 의견

강해인 위원 : 미리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해당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회신이 불가한 이유는?

하성호 위원 : 회신 불가 답변을 받은 내용은?

강해인 위원 : 최근 3개년 예산서, 결산서, 감사보고서 및 바롬인성교육 운영비용 예산서 및 결산서, 2017학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결산과 재무재표 부속명세서 및 계정별 원장이다.

하성호 위원 : 해당 내용은 공문으로 접수된 내용은 아니며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 자료로 준비 되었거나 유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접수중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 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 예정이다.

최혜지 위원 : 고등교육법의 내용은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 하는 것이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료 접근 권한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을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위원의 권한 외의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료를 가공하는 시간도 별도로 필요하다. 학생들의 요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출 할 예정이다.

강해인 위원 : 공개 범위 중에서 감사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 했는데 회신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회신을 안 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봉수민 위원 : 공문 상으로 요청한 내용은 11건이다.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요청 자료는 등록금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며,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인 경우 이를 명시하여 안내해 주지 않았다.

최혜지 위원 : 부회장님 말에 동의한다. 학생지원팀과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3개 정도는 자의적으로 관계부서에 요청하지 않았던 것 같다. 별도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다.

하성호 위원 : 요구하는 자료 중 제공 가능한 자료는 제공하며 열람이 가능한 자료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전에 자료 요청등 매끄럽게 소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했던 건 사과말씀 드린다.

강해인 위원 : 학생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 충분히 사전에 줄 수 있는 자료와 정리하기 어려운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받고 싶다.

하성호 위원 : 회의 종료 후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다.

강해인 위원 : 또 등록금심의 위원회에 발언자명과 발언요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싶다.

한승준 위원장 : 회의록 작성 시 발언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과 주요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는 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위원들이 동의하다.

강해인 위원 : 회의록에 직책도 만나와있고 누가 말한 건지도 모르고 결정사항만 적혀있으면 대표로써 그 말에 제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제3자가 봤을 때 모른다. 헌법상에서도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명과 발언요지를 적었으면 한다.

봉수민 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위원 1인 추가 요청한다.

최혜지 위원 : 외부 3인(외부 전문가 2인과 동문 1인), 학생 대표 3인, 학교 대표 3인,

총 9명이다. 학교 대표와 학생 대표가 동일 인수이다. 어떤 이유에서 변경을 원하는가?

강해인 위원 : 총장님이 선임하시는 회계사이다 보니까 학생입장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외부에서도 비민주적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고, 지금은 회계사 2명의 결정권한이 학교에게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 참여가 더욱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최혜지 위원 : 학생들의 등록금은 중요한 재원이다. 등록금만으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아닌 학부생의 입학금 인하와 학부 및 대학원생의 수업료(등록금) 동결로 진행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좋겠다.

강해인 위원 : 등록금 동결 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하여는 이해된다.

봉수민 위원 : 학생 1인을 추가 요청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 2인 선정 시 학생 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학생의 권리 측면에서 요청한 내용이며, 학생 구성원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강해인 위원 : 학생이 외부 전문가 1인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한승준 위원장 : 추가적인 논의는 2차 회의(2018년 1월 16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2018년 1월 9일

위원장	한승준
위원	최혜지
위원	하성호
위원	강해인
위원	봉수민
위원	신민경
위원	김문규
위원	박에스더
기록	차은호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